



환경부령 제 2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8. 6. 30

1. 개정이유

일부 1회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되고 있거나 대체재질의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규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이로 된 1회용품의 사용규제 완화(별표 2 제1호·제3호 및 제4호)

- (1) 종이로 된 1회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종이컵이나 종이봉투 등은 현재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2)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허용하고,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 봉투 및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완화(별표 2 제5호, 현행 같은 표 비고 1호의2 삭제)

- (1)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위생성, 보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회용품과 포장재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 그 사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적당한 측면이 있음.
- (2)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환경부령 제 291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6. 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46호, 2008. 6. 20. 공포, 2008. 6.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노동부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3. 17~4. 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법령마당 → 제·개정 공포법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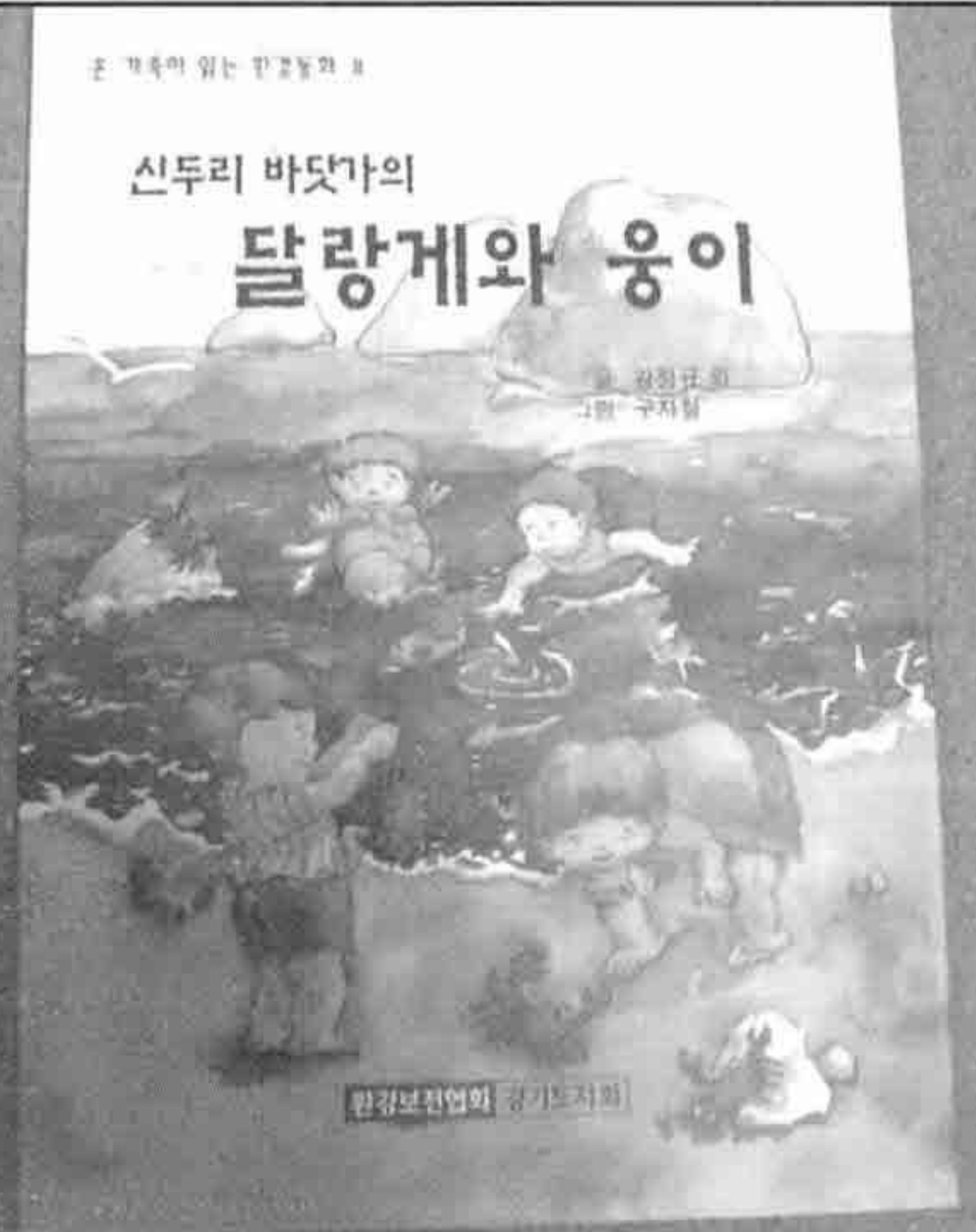
환경동화집 안내

- 신두리 바닷가의 달랑게와 응이 -

환

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에서는 환경동화집『신두리 바닷가의 달랑게와 응이』를 발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동화작가로 활동하시는 열 두분의 작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환경보호가 중요한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12편의 주옥같은 동화를 읽고 삶의 터전인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독서의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5,000원
- 발 행 /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
(☎ 031-253-0312~4)
- 발 행 일 / 2008년 6월 5일
- ISBN978-89-955327-3-7 73810
- 저자소개 / 글 : 강정규 외 11인
/ 그림 : 구자철
- 구매문의 /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
☎ 031-253-0312